제18권 제1호(2020) 279-313

일반논문

한국 대학 내 인권교육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인권센터를 중심으로*

백 승 민**

본 연구는 대학 내 인권센터가 인권교육과 관련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인권센터가 개소하기 시작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4년제 대학에 설립된 50여개 인권센터들의 규정과 실시 여부, 내용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센터 절반 정도가 인권교육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인권교육을 운영하고 있었다. 온라인 교육, 특강, 서포터즈 모집을 통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었다. 반면, 실제 내용은 다소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주로 온라인 교육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폭력예방교육이 그 내용을 채우고, 특강의 주제도 젠더 문제가 다수였다. 전체적으로 인권센터 개소 이전의 성고충상담센터의 침해 예방 교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정도였다. 인권센터 설립은 늘어났지만, 그것만으로 인권교육이 늘어난다고 하기 어려운 결과였다. 친인권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학이 인권센터의 역할과 운영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인권규범이 대학이라는 조직에 적용되었을 때,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를 인권센터 중심으로 살펴보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이를 기점으로 앞으로의 인권교육 변화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주제어: 인권, 인권교육, 대학 인권센터

*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2019)의 일부를 발췌 및 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연구원.

www.kci.go.kr

1. 문제 제기

2018년 한국 사회는 “미투(#Metoo)”로 모든 관심이 집중되었다. 한두 가지의 특정 상황에서 발발한 성폭행이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곳에서, 매일같이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문제는 ‘대학’ 조직 내부에서도 폭로되었다. 교수-학생 뿐 아니라 학생들 사이의 성추행 및 성폭행, 성희롱 등이 쏟아져나왔다. 학생들은 학내 문제 해결을 위해 인권센터 설립을 강하게 요구했다(전명훈 2018; 오마이뉴스 2018).

인권센터 설립 요구가 있었던 것은 2018년보다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6년, 대학원생에게 인분을 먹이고, 가혹한 폭행, 밤낮없는 업무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이 있었다. 사건이 보도되면서 특정 개인 뿐 아니라 상당수 대학원생에 대한 가혹 행위와 과잉 업무 등도 문제라는 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대학들은 ‘대학원생 인권(권리) 장전’을 재빠르게 발표하기 시작했다(김지훈 2016; 신은별·정반석 2017).

이러한 사건들은 2010년대 대학 구성원들이 인권센터를 학내 문제 해결 실마리로 보고 있음을 알려준다. 성폭력·성희롱 문제나 과잉 노동, 임금 문제 등은 대학 내에 새롭게 등장한 문제가 아니다. 기존에는 개인의 일탈,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사법적 처벌로 문제가 정리되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인권 관점 대입이 많아지고 있다. 대학 구성원들의 요구는 대학이 좀 더욱 인권 친화적이길 바라는 것이고, 인권센터 설립을 통해 그러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또, 대학들 역시 대학이 인권을 옹호한다는 의미로 인권센터 설립, 기존 기구(상담소)에서 확대 개소하는 등 제도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인권센터’의 역할과 성격을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는 인권센터에 대한 초기연구로서, 현실에서 그 내용을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www.kci.go.kr

본 연구는 센터에서 실시할 인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도 인권교육에 집중한다. 대학의 주요 기능이 연구와 교육인 만큼, 국제적으로도 인권교육 도입에 포함되었다. UN은 1995년부터 제도권 교육에 인권교육 접목을 위한 'UN 인권교육 10년 행동계획 1995-2004(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를 시작으로, 초중등교육에 인권교육을 중점적으로 계획한 '제1차 세계 인권교육프로그램 2005-2009(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the plan of action for the 1st phase)', 그리고 대학 및 공무원·군인·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교육 접목을 시도한 '제2차 세계 인권교육프로그램(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the plan of action for the 2nd phase)'을 발표하였다. Suárez·Bromley(2012)는 사건사 분석(Event-history analysis)을 통해 세계 인권운동 흐름이 대학의 인권 프로그램들을 발전시켰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대학 내 인권센터는 인권교육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와 같은 궁금증을 갖게 되었다. 이 물음 답하기 위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성을 하였다.

우선, 제도권에서의 인권교육 선행연구를 통해 인권센터의 인권교육 연구 질문과 연구방법 등을 찾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 대학에서 인권센터의 설립 추이와 주요 활동 영역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또, 인권교육의 방식, 주제 및 내용은 무엇인지 정리하여 인권교육 실시 유형(pattern)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조사·분석하였다.

2. 인권교육과 인권센터의 확대

1) 인권교육의 제도화

현대 사회의 통용되는 인권은 세계 1, 2차 대전 이후 설립된 UN과

www.kci.go.kr

1948년 유엔 인권선언을 기반으로 한다. 국제 사회의 인권 확대는 국제 인권 보호 문서 발표와 국제법 체제 형성, 지역 및 개별 국가들의 비준과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듦으로써 가능해졌다(Landman 2004, 907). 그리고 UNESCO, ILO와 같은 특수 국제기구들 역시 정치적 성향과 별개로 교육과 노동 등과 관련된 인권침해 및 차별 상황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어주었다. 다른 한 편에서는 국가 행동에 대한 감시·보고, 사회에 인권 적용을 위한 국내외 인권 NGO들의 활동을 통해 확대되었다.

인권교육은 인권 확대를 위한 전략으로, '교육받을 권리(교육권)'를 넘어 그 교육을 통해 인권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려는 시도이다. 국제기구가 제도권의 인권교육에 대해서 권고하기 전부터 시민사회운동 조직들은 인권교육을 사회 변화 전략으로 실시해왔고, 인권교육 확대와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Davis·Murdie·Steinmetz 2012). 한국의 인권 NGO들 역시 1994년부터 학교에서 도덕/윤리교과를 인권교육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김녕 2004, 91-92). UN의 인권교육 계획과 프로그램 발표는 시민사회의 인권조직들이 인권교육 활동과 교육 필요성에 대한 주장을 반영하여 제도권 내에도 인권이 좀 더 비중 있게 다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하였다.

그러나 인권교육의 정의와 원칙 등은 애매하다. 인권에 대한 관점과 인권 관련 요소들이 다양해서 지식의 범위가 광범위해질 수밖에 없다. 인권교육이 지식 뿐 아니라 인권 보호 행위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인권의 측면들과 기술을 연결 시켜야 함을 뜻한다. 또, 개인들의 배움과 행동이면서 해당 공동체 내의 배우는 과정과 환경이 중요하다. 이를 정리해보자면, '인권교육' 안에는 '인권에 관한 (지식/내용) 교육', '인권을 위한 교육', 그리고 '인권적인 (환경 차원의) 교육'이 동시에 들어 있다.

한국은 1991년 UN 가입을 시작으로 국제 인권조약들을 비준해왔고,

www.kci.go.kr

인권의 국내화 작업 보고와 인권NGO들로부터 감시받는 등 인권 레짐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인권교육에 대해서는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과 같은 국내화 시도에 포함되어 진행 중이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서 인권교육은 사회 전반에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의 큰 틀을 만드는 인권교육 일반과 학교, 공무원, 군대, 변호사,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일반국민 대상 인권교육으로 나눈다. 2003년에 1차 계획안이 만들어질 때,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권고안을 작성하고, 관계 부처 협력을 위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그리고 권고안을 기반으로 하여 각 처 장관들의 조정 및 협의,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통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백승민 2019, 35). 2007년에는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인권교육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기도 하였다(윤지은 2007). 국회에서는 2011년 이은재 의원, 2016년 유승민 의원, 2018년 정성호 의원이 인권교육(지원)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이들 법안은 각종 공공기관 인권교육 의무화 및 활성화, 인권교육종합계획 등을 담았었지만 매번 개신교 단체들로부터 인권교육이 동성애를 부추긴다는 격렬한 항의로 무산되었다(김태규 2018). 반면, 이러한 다각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대학 인권교육에 대한 유도 및 규제 정책은 없었다.

한국에서 고등교육 과정은 입시, 교육방식과 재정 문제 등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대학 간 대립이나 반목, 협조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남수경 2005; 안정희·배성아 2013; 문광민 2018). 그러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국제 보고에서 고등교육 내 인권교육은 국내 계획안에서처럼 구체적이지 않고, 필요성과 계획이라고 언급된 정도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 권고, 조사 활동을 통해 인권교육 제도화에 노력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에서의 인권교육과 관련한 토론회 및 각종 행사를 다수 진행하였는데, '한국적 인권교육 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 워크숍(2006)', '사회복지분야 인권관점 도입, 확산을 위한 워크

www.kci.go.kr

샵 개최(2006)', '제7차 인권교육포럼 학술대회(2009)', '인권위-충남대 인권교육 세미나 공동개최(2013)', '사회복지 교육 과정의 인권교육 도입방안에 관한 학술토론회(2014)',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인권교육 현황과 발전방향 토론회(2015)', '인권위, 충남대, 민주교수협회 2017년 3차 한국 인권교육포럼(2017)', '사회복지 분야 인권교육, 그 실태와 대안은?(2018)' 등 대학 전체 뿐 아니라 학문영역과 인권교육의 접목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또한 대학에서의 인권교육 실시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였다. 2003년부터 실시한 대학 내 인권교육 현황 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09; 2012; 2014), UN의 인권교육 10년 계획과 관련한 연구(2011), 사회복지학과에서 인권과목 개설을 위한 연구(2013) 등에 따르면, 전공명에 '인권'이 포함되어 있거나 교육 계획표에 인권 내용을 절반 이상 할당하고 있는 수업이 많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14년 보고서는 인권교육 개설 현황과 강의자 인터뷰를 통해 대학의 인권교육 경험을 종합하였다. 이전에 실시했던 인권교과목 개설 조사 결과보다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 영역도 다양하게 나타났다(백승민 2019, 40).

2) 한국 대학 내 인권센터의 증가

(1) 성평등 상담센터(인권센터 이전 기구)의 역사

대부분의 인권센터들은 신설보다 이전에 존재하던 기구를 확대·개설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대개 성평등·성희롱 상담소였으며, 취업이나 성격검사, 장애인 상담 등 학생생활에 관련한 활동들이 주를 이루었다. 인권센터 설립과 관련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들 모체(母體)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대학 내 특정 학문들이 제도화 된 과정과 요인을 연구한 학자들은 대학 내부뿐 아니라 사회 환경 역시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김형종 2017; 은기수 2002; 정준영 2013; 이강원 2013; Kraatz·Zajac 1996; 이나

www.kci.go.kr

영 2011; 김태영 2012), 성평등 센터가 한국의 '성주류화' 과정과 관련이 있고, 이를 기반으로 인권센터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1979년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이 UN총회에서 채택되고 1990년대에는 여성 문제가 가정폭력이나 전시 상황에서의 강간 문제 중심으로 등장했다. 그로 인해 여성에 대한 폭력, 차별 등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 되었던 부분이 공적인 문제로 전환되었고, 1995년 베이징 대회에서 성주류화가 채택되면서 한국도 이를 받아들였다(배유경 2015, 44).

한국은 1983년 국무총리 정책자문 기구인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하였다. 법 제정을 통해 여성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대상에서 평등한 존재로 바꾸었다(박은미·정우열 2008, 250). 또한 여성학의 확산과 발전으로 인적, 이론적 자원이 생성되었다. 1990년대는 UN의 여성인권 개념과 계획에 따라 국내도 정책화에 힘을 썼다. 김대중 정부는 성주류화를 여성정책 패러다임으로 채택하여 2001년 여성부를 출범시켰다(배유경 2015, 47). 여성부는 1999년에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중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포함된 성희롱 관련 조약을 근거로 성희롱 근절을 중점 사업으로 선정하고, 공공기관에 '성희롱 고충 상담 창구' 마련과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대학도 공공기관에 포함되어 2000년대 초반 서울대를 필두로 주요 대학에 관련 규정에 제정되고 관련 업무 부서가 설치되었다[1]. 이후 대학과 관련된 사건들(성폭력, 대학원생, 청소노동자 등)을 거치며, 문제 해결책으로 학내 인권센터가 주목받아 기존의 성고충상담창구가 인권센터로 개소하였다.

1) 2005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 관련 업무를 통합하면서 성희롱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다.

www.kci.go.kr

⑵ 인권센터의 양적 증가

변화 과정이 자세히 확인 가능한 인권센터[2]는 서울대와 중앙대이다. 두 학교 인권센터 모두 2012년에 개소하였다. 인권센터로서 개소한 시기는 같지만, 서울대는 2007년에 성희롱성폭력상담소와 인권상담소를 설립하고 추후 인권센터로 확대 및 통합, 중앙대는 2009년에 성평등상담소 설립 후 인권센터로 바뀌는 과정을 거쳤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후 충남대(2013), KAIST(2014), 동국대(2015), 고려대와 전남대(2016) 순으로 센터가 개소하였고, 2017-18년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수의 인권센터가 개소하였다.

〈그림 1〉 대학 내 인권센터 설립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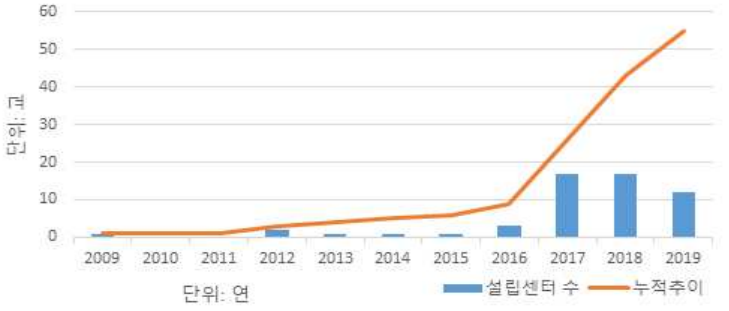

인권센터들은 새로이 '인권센터'가 생겨난 경우보다 대개 상담, 특히 성문제상담을 전담하던 센터에서 인권센터로 바뀌었다. 성평등센터/상담소, 성희롱·폭력상담소, 양성평등상담소, 학생상담센터 등의 형태에서 확대나

2) 전북대 인권센터에 전화 문의와 문헌자료(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포럼·전북대 인권센터, 2009)를 통해 2009년에 전북대에 인권센터가 있었던 것을 추정할 수 있으나 인권센터의 설립 시기와 역할이 정확하게 기록된 것은 서울대와 중앙대이다.

www.kci.go.kr

명칭 변경을 하였으며, 인권센터가 생긴 후에도 같은 운영 구성원(들)과 물리적 공간이 성평등센터와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 대학 성평등 상담소 협의회'는 선택적 가입이나 주요 대학의 인권센터들도 포함되어 있고, 협회 세미나에서도 인권센터를 상담기구 사례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주관으로 인권센터 사례 발표 세미나나 별도의 회의를 통해(인권위 2017) 인권센터도 자체적인 영역을 잡아가고 있다.

인권센터는 초기에 수도권 위주로 개설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2018년 이후부터는 지방 대학들도 인권센터를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설된 학교들을 지역별, 학교 설립형태에 따라 나누면 다음과 같다.

〈표 1〉 2009-2019년 인권센터 설치 대학교

	수도권	지방	계
국공립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과학기술대	충남대, 충북대, 전남대, 전북대, 경북대, 제주대, 순천대, 안동대, 창원대, 부경대, 부산대, 군산대, 인천대, 금오공과대, 목포대	18
사립	고려대, 중앙대, 동국대, 연세대, 한양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평택대, 단국대, 아주대, 건국대, 상명대, 가천대, 성신여대, 인하대	부산외대, 호남대, 경남대, 경일대, 계명대, 김천대, 대구대, 동양대, 원광대, 전주대, 세명대, 순천향대, 대구가톨릭대, 배재대, 상지대, 위덕대, 인제대, 초당대	34
계	19	33	52

(단위: 교)

본 연구는 4년제 대학으로 범위를 한정하였고, 한국체대, 한국교원대 등과 같이 유사 전공으로 이루어진 학교들은 제외하였다. KAIST, UNIST,

www.kci.go.kr

GIST, 목포해양대는 단일 혹은 유사 전공으로만 이뤄진 학교들은 연구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칙에 따라 포함되지 않았으나 본 연구조사 기간에 해당하는 2009-2019년 사이에 인권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었다.

3. 이론적 배경

인권교육은 그 자체가 권리로, 인권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며(백승민·김민지 2016, 29), 인권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인권교육법, 조례제정, 노인·청소년·공무원·다문화 등 특정 직군이나 상황의 사람들에 대한 인권교육, 시민사회의 인권교육, 학교 인권교육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제도권 인권교육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과정에 집중되어 있다. 아동의 권리(교육권)와 제도권 교육의 영향력이 함께 강조되기 때문이다. 유아 및 초중등의 인권교육 주요 주제는 교육내용, 효과에 대한 것이었다. 교육 내용에 대한 연구방법으로는 교과서 내용 분석을 통한 변화, 주요 개념 등을 보여주는 것이다. 교과서 내용 분석변화는 일반교과 내용 분석(구정화 2004; 2016; 김숙자·장갑희 2010; 하경수 2013; 최형찬 2014; 은지용·설규주 2016)부터 국제 비교나 단일 국가 내 교육과정에서 인권 내용 확대를 확인하는 연구들까지(Firer 2002; Meyer·Bromley·Ramirez 2010; Moon·Koo 2011; Oomen 2013) 다양하게 실시되었다. 초·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사회 교과 혹은 도덕 교과서에서 인권 내용 변화에 대한 내용 분석이 이루어졌다.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인권교육은 시민의 덕목 뿐 아니라 노동, 젠더 등 좀 더 다양한 주제가 교과 내용으로 드러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육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과나 교육 활동을 통해 인권교육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남을 보였다(Asano 2000, 108-109; 서보라·박찬석 2016; 강경욱 2012; 황동진·송혁·김

www.kci.go.kr

사현 2015).

대학에서의 인권교육 연구는 인권교육 자체에 대한 철학적 고찰과 범위에 대한 연구보다는 현재 고등교육 방식(교양, 전공)과 인권교육을 연계해 이뤄지고 있다. 크게는 인권교육 효과와 인권 및 전공 내용과의 연계를 살펴보는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인권교육 효과 연구들은 주로 교육 전후 대학생들의 인식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었다(이승미 2000; 박성익·이승미 2000; 류지헌·허창영 2008; 조윤경 2018, 66; 방대혁 2013; 심태은·이송이 2018). 해당 연구들은 설문이나 인터뷰 등 실험 과정을 통해 현재까지의 인권교육의 효과와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 인권교육이 필수적으로 대학에 자리 잡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전공별 인권교육 연구는 전공 교육에서 인권과의 연관성과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두드러지는 분야로는 법학(박찬운 2008; 염형국 2008; 채형복 2011; 조연민·홍인 2013; Smith 2013), 사회복지학(이혜원·최경옥·이혜영 2009; 김세영 2015), 교육학(이주한 2013), 간호학(이경희·정상우 2013; 황주연·최현경 2015)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연구는 기본적으로 해당 전공 분야에서 인권 인식에 대한 비교나 인권교육의 효과(인권감수성)를 분석하고, 해당 전공에서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한다. 이 외에도 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인권교육 경향을 조사한 연구(Kingston 2014; 백승민·김민지 2016)도 있었다. 그러나 인권센터에 대한 교육은 크게 주목받고 있지 않다. 기존에 국내 대학 인권센터에 관한 연구들은 인권센터의 필요성 강조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정도이다. 인권교육과 관련해 김영중(2018)은 인권교과목 개설을 위한 전문가 확보, 인권교육 모듈 제공 등도 인권센터의 역할로 보았다. 홍성수(2019) 역시 인권교육을 인권센터의 중요 기능으로 보았으나, 국가인권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독립성과 권한 등을 통해 인권문제해결에 좀 더 초점을 두어 설명하였다.

www.kci.go.kr

UN은 고등교육의 인권교육 실천방안에 대해 학술적인 영역뿐 아니라 훈련 및 자료정보센터 설립, e-learning 활성화 등 온라인 활용(인권위 2010, 26-29)등 전방위적인 방법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인권센터 역시 대학 내에서 인권교육의 중요 부분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한국 대학의 인권센터는 특정 전공과 관련된 형태로 있기보다는 총장 직속, 혹은 부속 기타 기구로 존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교육기관의 연구·교육 활동 등 교과나 전공과 같은 지식 형성 과정을 통틀어 커리큘럼이라 하는데(Benavot·Cha·Kamens·Meyer·Wong 1991), 이와 별도로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활동들을 '엑스트라 커리큘럼'이라 한다. 엑스트라 커리큘럼 관련 연구들은 이러한 조직, 활동 등의 역할과 효과 분석에 집중되어 있다(Shulruf 2010). 엑스트라 커리큘럼은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발전과 사회화(Cuccia 1981), 경험 확장(Holland·Andre 1991), 진로와 관련된 기회제공(Little 2002; Stuber 2009) 등의 분석들이 있다. 이러한 분석들은 대학 내에서 부속기구, 기관들이 교육자-피교육자로서의 구체적인 설정과 별개로 효과를 내고 있으며, 인권센터 역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인권교육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얼마나 확산되고 있느냐를 교과서 내용, 전공과의 연계 노력 및 효과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측면을 반영하여 본 연구는 인권센터와 인권교육과의 관계를, 인권교육 확산 정도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인권교육에 대한 환경과 어떤 내용들로 인권교육을 구성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인권교육에 대한 환경이란 대학, 사회에서 인권센터에서 인권교육이 실시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지에 대한 부분이다. 인권센터는 전공과 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 대학의 일반적인 교육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센터 설립만으로 인권교육을 담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인권센터 설립, 인권교육 횟수 등 양적인 지형도 확인 뿐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인권교육을 채워나가고

www.kci.go.kr

있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제도로 인권교육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직 내에서 의도나 방향, 강도도 달라질 수 있다(Savelsberg 1992; Friedland·Alford 1991; Thornton·Ocasio·Lounsbury 2012, 41; Edelman 1990; Thornton·Ocasio 1990; Cole 2015; 김수경 2019).

4. 연구방법

본 연구는 대학 내 인권센터가 인권교육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 인권교육에 대한 분석들은 당위성과 효과, 그리고 확대를 증명하고 있다. 고등교육과정까지 인권교육 연구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제도권 교육에서도 인권교육이 당연시되고, 확장되어왔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확대된 기간이 짧고, 인권교육 실태에 대한 자료가 한정적이며, 초·중·고교 교육과 다른 고등교육 특성(전공, 연령) 등 여러 가지 특수한 조건 때문에 인권교육에 대한 진행과 연구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대학 내 인권교육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준거 기준이 된 인권교육 환경과 교육 내용 분석을 위해 각 대학 인권센터들의 인권교육 관련 정보를 분석하였다. 인권교육 실시나 교육방식, 주제 뿐 아니라 앞서 인권 및 인권교육 발전 과정에서 환경적 요소가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인권교육에 대한 제도적 언급이 되었는지도 포함하였다. 또, (그 외 인권교육이 가능한) 기타 활동, 국가인권위원회와의 MOU 등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 인권센터가 형성하고 있는 인권교육에 대한 제도적 환경과 양적 현황, 내용 등 인권교육의 유형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연구질문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www.kci.go.kr

· 인권교육을 위한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가: 센터의 기능에 인권교육을 규정해놓았는가? 대학에 인권교육을 권고하는 시도들이 있는가? 그 규정을 실천하는가?
· 인권교육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교육방식은 무엇인가? 주제는 무엇인가?

연구 대상인 인권센터는 4년제 대학에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설립된 곳을 대상으로 한다. UN의 대학에서의 인권교육 적용 시기 역시 2009년에 시작했을 뿐 아니라 최초의 인권센터로 확인되는 전남대 인권센터가 2009년부터 존재했다는 기록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또, 대학 내부 문제들에 대해 '인권' 프레임으로 해결을 요구하는 본격적인 시기가 2010년대 이후이기 때문에 2009년부터 10년 동안의 변화를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였다.

인권센터의 경우 2009년에서 2015, 16년까지는 큰 변화가 없다가 2017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였다. 개별 학교마다 홈페이지에서 교내 기구(표)를 확인하여 인권센터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당시 전국 대학 인권센터 현황을 조사하여 제출했다는 기사(원종진 2017)를 참고하여 의원실에 직접 자료 확인을 부탁하였다.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인권센터 설치자료를 2018년 5월 23일에 받아 가지고 있던 자료와 대조해 찾지 못했던 학교들을 본 연구에 포함하였다. 이 과정에 따라 본 연구에 분석 대상이 된 인권센터는 52곳이다. 캠퍼스가 2개 이상인 경우, 서울 캠퍼스나 대학 본부가 설치된 캠퍼스에 인권센터를 두고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대학과 한 대학 안에서도 개별 캠퍼스마다 인권센터를 별도 설치한 학교들도 있었다. 본 연구는 두 개 이상의 캠퍼스에 인권센터가 있더라도,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각 대학당 하나의 인권센터로 상정하였다. 그리고 의원실 자료에 포

www.kci.go.kr

함된 학교 중 인권센터를 찾을 수 없거나 기존상담센터가 인권교육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3], 대학원[4]이나 특정 학과[5]에 한정된 인권센터는 포함하지 않았다.

인권센터의 인권교육 현황은 대학 홈페이지나 인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인권센터 개설 시기와 '교육'이라고 명명한 활동 중 폭력예방교육, 성평등교육 등의 성희롱·성폭행 교육과 분리된 '인권교육' 실시 여부, 인권교육 방식(온라인, 특강)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6]. 인권교육 내용 분석 자료로는 온라인 인권교육 내용과 인권교육 특강 주제들을 조사하였다. 여러 대학들이 온라인 자료로 서울대에서 제작한 내용을 사용하고 있어, 가장 최신인 2018, 2019년 서울대 온라인 인권교육 내용을 살펴보았다. 온라인 교육은 다수의 학습자들에게 시공간에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접근가능하기 때문에 대학 내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필요하다고 엄선된 내용이 담겨 있다. 인권교육 영상에 나레이션으로 나오는 내용을 문서화 하여, 반복적으로 읽으며 교육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였다. 인권교육 특강은 고정된 교육은 아니지만, 학교마다 학생들에게 필요하거나 관심 있을 만한 주제로 개최하기 때문에 어떤 인권 문제가 관건인지 파악할 수 있다. 인권센터와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 뉴스 검색을 통해 '인권교육', '인권특강'이라고 언급된 행사의 포스터 등을 확인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항목에 관한 내용을 <표 2>로 정리해보았다.

3) 한밭대, 한림대, 교원대, 포항공대, 차의과대, 남서울대, 동아대, 국민대
4) 서강대, 선문대, 총신대
5) 법학과나 법학전문대학원 소속에 인권 관련 연구소가 존재하였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한양대 공익소수자인권센터,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 영남대 인권교육센터는 모두 법학전문대학원 소속이다.
6) '인권/성평등 온라인교육', '인권/폭력예방 온라인교육'은 포함하였다.

www.kci.go.kr

〈표 2〉 인권센터의 인권교육 특성별 조사 항목

구분		내용	자료 출처
제도적 환경	인권센터 설립시기	설립연도	대학 및 인권센터 홈페이지
	학교 유형	국립	대학 홈페이지
		사립	
	인권교육 계획	계획이나 규정 없음 (확인 불가 포함)	인권센터 홈페이지
		계획이나 규정 있음	
	국가인권위원회와 MOU	MOU 체결 여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인권교육 운영 관련 특성	상담만 실시	상담 기능만 존재	인권센터 홈페이지
	상담·인권교육 실시	실시하지 않음 (확인 불가 포함)	
		실시 확인	
	인권교육 다양성 (방식)	온라인 교육	인권센터 홈페이지, 센터 관계자 면담
		인권 특강	
		온라인 교육, 인권 특강	
		그 외 교육(연구, 정기교육, 수업 등)	
	인권교육 내용	확인되는 인권교육 주제 및 내용	대학 및 인권센터 홈페이지, 인터넷 신문기사
	기타 교육활동 여부 (서포터즈)	서포터즈 유무	인권센터 홈페이지

5. 인권센터의 인권교육 유형 분석

1) 인권교육 제도적 환경

본 연구는 인권센터에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제도적 조건으로 인권교육에 대한 사회(대학 외부)의 구체적 권고나 압력 여부와 센터의 내

www.kci.go.kr

규, 학교 학칙 등에 인권교육에 관한 명시가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실제 인권교육을 운영하는지 확인해보았다.

먼저, 인권교육에 대한 외부 권고로써, 대학에 인권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교육 MOU 체결된 곳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시도들은 대학 자체에 인권교육을 권고하여 학술적인 부분에서의 교육 뿐 아니라 인권센터-인권교육으로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인권교육 증진을 위한 대학 MOU는 2006년 전남대를 시작으로 가장 최근에는 2018년 서울대까지 총 14개교와 MOU을 맺었다(<표 3>). 국가인권위원회는 MOU를 통해 학내 인권보호·증진에 기여했다고 밝혔다(국가인권위원회 2018).

〈표 3〉 대학-국가인권위원회 MOU 체결 및 인권센터 설립 현황

MOU 체결대학	체결시기	인권센터 유무
전남대학교	2006. 12. 06	○
영남대학교	2007. 04. 27	-
인하대학교	2007. 10. 31	○
한양대학교	2007. 11. 01	○
고려대학교	2007. 11. 21	○
이화여자대학교	2007. 11. 22	○
전북대학교	2007. 12. 21	○
충남대학교	2008. 05. 07	○
부산대학교	2008. 05. 07	○
경상대학교	2008. 11. 18	-
충북대학교	2012. 10. 09	○
동국대학교	2016. 08. 05	○
연세대학교	2017. 12. 11	○
서울대학교	2018. 02. 07	○

www.kci.go.kr

초기 MOU를 체결한 10개 대학들의 총장 간담회와 기획처장 협의, 인권교과목 담당 교수 워크숍도 있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11, 843).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전에 인권 실무수습 등의 협약 체결을 위해 대학 쪽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와 MOU에 적극적이었다(윤설영 2007). 14개 대학 중 2008년까지 10개 대학과의 MOU가 이뤄졌다는 점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학 모두 인권교육을 받아들이는 데에 각자 이유에 따라 적극적이었음을 보여준다. 2010년대 들어서면서 대학 인권교육과 관련된 공식 활동을 찾아보기 힘들었으나 2017년에 다시 대학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관련 행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당시 한 해 동안 3번의 한국 인권교육 포럼 개최 장소가 동국대, 이화여대, 충남대로 모두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교육 MOU를 맺은 대학들이었으며, 특히 3차 포럼의 주제는 '대학, 인권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바 있다. 그리고 2017년 3차 인권교육 포럼에서는 [2017년 제2차 인권교육·연구중심 대학 협의회]가 개최되어 각 대학의 인권교육 현황을 교류하였다(인권위원회 2017). 이러한 사실들은 인권위원회와 인권교육 MOU를 맺은 대학들의 관계가 유지됨을 보여준다.

현재 대학의 인권센터들 중 인권교육이 실행될만한 환경조성(인권센터의 규정)과 실제 운영을 비교해보면, 전체 52개교 중 인권교육에 대한 계획을 명시한 곳은 28곳이었으며, 실제 운영이 확인되는 곳은 25곳이었다.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인권교육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실제로도 교육을 하고 있었다. 반면, 인권센터가 상담만 운영하는 것을 확인한 곳은 8곳이었다. 이들은 센터 규정에도 주요 업무로 상담을 내세우고 있었다. 그리고 인권교육 계획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인권교육 활동을 알 수 없거나 폭력예방교육만 언급해놓은 경우, 인권특강 한 번, 교육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인권센터는 19곳이었다.

인권센터 계획에 명시된 인권교육 실시 목표로는 '인권침해 예방 교육',

www.kci.go.kr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이 있었는데, 두 가지 목적 모두 친인권적 환경 조성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여 분석 과정에서 구분 없이 모두 포함하였다. 인권교육 실제 운영에 대해서는 ‘인권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오프라인, 특강, 심포지엄 등을 모두 포함하였다.

〈그림 2〉 인권교육 실시 여부에 따른 인권센터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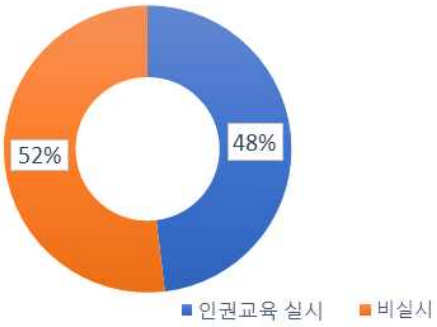

본 연구 결과에는 인권교육을 진행한다고 했으나 운영하지 않는 경우, 현황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더 많은 인권센터가 교육을 운영하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센터들의 주요 업무에서 인권교육 비중이 적음을 확인하는 데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전체 인권센터 중에서 절반만이 인권교육에 대한 명시를 하고 있었고, 실제 운영하는 경우는 그보다 적었다.

그리고 이들 센터의 인권교육 현황과 국가인권위원회와의 MOU 체결을 비교해보았다. 인권센터에서 인권교육 계획과 실시를 개소시기로 나누고, 이 중 MOU 체결학교를 살펴본 결과, 시기를 기준으로 나누어보았다.

www.kci.go.kr

〈표 4〉 개소 시기에 따른 인권교육 제도 및 운영

인권교육 운영 성격	초기 (-2016)	후기 (2017-2019)	계 (비율)	MOU 체결 학교
1. 인권교육 계획이 있는 경우	6	22	28 (54%)	7
2. 인권교육 운영 확인되는 경우	6	19	25 (48%)	7
3. 계획과 인권교육 운영 모두 확인되는 경우	6	13	19 (37%)	7
4. 상담소만 운영	1	8	8 (15%)	1

(단위: 교)

MOU를 체결한 대학 중 12개 대학이 인권센터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 모두가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2016년 이후 체결한 동국대와 서울대는 이미 인권센터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권교육 MOU가 전체적인 인권센터의 인권교육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MOU를 맺었을 뿐 아니라 인권교육 활동이 활발한 대학들에 대한 요인 분석은 추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인권교육 운영 분석

(1) 인권교육 방식

센터들의 인권교육 방식은 온라인 교육과 신청형 오프라인 교육, 비정기·정기 특강, 학점으로 연계되는 교양 수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개인이 신청하는 온라인 교육과 강사를 초청하여 진행하는 오프라인 교육으로 나뉜다. 각각 교직원과 학생용으로 나뉘어 있다. 온라인 교육 영상은 서울대 인권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작한 영상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인권교육'보다는 '인권과 성평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다. 혹은 폭력예방교육 영상을 온라인 인권교

www.kci.go.kr

육 영상으로 제시한 경우도 있었다. 오프라인 교육은 일정 이상 인원이 모인 집단에서 신청 시 교육이 이루어지며, 교직원의 경우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 신청과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한다. 근래에는 신입생 OT 의무 교육으로 확산 되고 있다. 고려대는 학부 2017학번 신입생부터 인권-성평등교육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실시하는 의무교육으로 지정했다. 한양대 인권센터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성희롱/폭력 예방교육 실시를 홈페이지에 명시해두었다.

인권특강의 경우는 정기와 비정기 특강으로 나눌 수 있다. 시기적으로 관심이 높은 주제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거나 센터 개소 시기에 인권 관련 전문가 강연을 하기도 한다(김유림·민승용·김민재 2017; 조영은 2018). 정기 특강은 대개 인권센터가 주기적으로 인권주간 행사나 인권문화제를 진행하는 데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공개 강좌 형식으로 학내 구성원들에게 인권센터 홍보와 인권에 대한 환기를 목표로 한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인권주간 행사로서 인권특강 뿐 아니라 대중에게 개방된 '열린인권강좌', 사회운동가와 학자들이 함께 모여 인권 이론과 실천에 대해 논하는 '인권과 아시아' 역시 매번 정기적으로 열린다.

인권센터의 또 다른 교육방식은 대학 수업과의 연계해 실시하는 것이다. 수업 내용이나 강사 채용 등을 센터에서 관리하지 않지만, 인권센터 세칙 및 학칙을 함께 고려하여 인권 교양과목을 개설한다(연세대 2018, 190). 또, 인권 서포터즈 선발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제공하기도 한다. 본 연구 조사대상이 된 인권센터 중에는 서울대, 중앙대, 동국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부경대, 평택대, 서울시립대, 건국대가 인권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인권 및 인권센터 홍보, (서포터즈 대상) 인권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었다.

www.kci.go.kr

⑵ 인권교육의 주요 내용

이렇게 실시되는 인권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온라인 인권교육[7]은 각 학교마다 자체 제작하지 않고 서울대 인권센터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영상자료를 여러 대학이 활용한다. 그래서 본 연구는 초기 인권센터를 개소한 대학이자 활동 영역이 다양하고 활발한 서울대 인권센터의 온라인 인권교육(학생용) 내용을 확인하였다.

2018년 서울대 온라인 인권교육은 영어, 한국어로 제공되며, 학생 대상의 인권교육은 '인권교육과 젠더 평등(2018 online education for Human rights and Gender equality for students)'이란 제목으로 '인권교육/폭력예방교육(성추행, 성폭행, 성매매, 가정폭력)'이 각각 영역별로 제공되었다. 온라인 인권교육에서 제시된 내용은 인권헌장과 한국의 민주화 과정 등 국제, 국내 인권 도입 과정을 초입부로 하여, 한국에서의 인권 발달사, 대학에서 인권과 관련된 사건(장애인권, 흑인 학생의 교육권, 여학생 입학과 선거권 등)으로 이어지며 '대학'이라는 공간에 '인권'을 잇는다.

2019년부터는 내용 구성에 변화가 생겼다. 기존에는 폭력예방교육과 별도로 인권 타당성을 언급하였으나 '인권-대학(교육권과 교육의 인권적 가치)-대학 내 불평등 문제와 관계-근본적으로 젠더 불평등 문제/성매매, 가정폭력' 순의 내용구조로 바뀌었다. 분리되어 있었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인권과 젠더폭력 문제로 좀 더 긴밀하게 설정하고, 대학과 사회 문제를 넘나들며 다루었다. 그 전보다 '여성인권', '젠더문제'로 인권교육 내용이 집중되고 있었다.

센터의 인권교육은 특강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인권센터 서포터즈를 모집해 인권센터의 각종 활동을 홍보하고, 서포터즈 학생들을

7) 온라인 인권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제작하는 성평등교육으로 구성되기도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온라인 인권교육 내용 분석 대상으로는 '인권'이 핵심어로 포함된 대상에 한정하였다.

www.kci.go.kr

대상으로 그들이 관심 갖는 주제로 교육을 하기도 한다.

〈표 5〉 대학 내 인권센터 인권교육 주제

교육 종류	특강	인권서포터즈 교육
주제	여성(METOO, 여성의 몸, 성매매, 임신, 이주여성, 데이트폭력, 성인지, 페미니즘), 장애, 노동, 성소수자, UN 인권레짐 및 일반 인권, 세월호, 혐오표현, 북한인권	장애인권, 여성(데이트폭력, 디지털범죄, 페미니즘)

인권센터들이 진행한 특강식 인권교육의 주요 주제는 여성, 장애, 노동, 혐오, 난민, 성소수자 등이 있었다.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제 위주로 선정하기 때문에 서울대처럼 자체 정기 교육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주제가 유사하다. 특강은 주로 외부 강사를 의뢰해 진행되었다.

센터의 인권교육 종류와 내용을 종합해보면, 인권교육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인권 프로그램이나 정기적으로 교육을 강제할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온라인-오프라인 인권교육에서 의무화인 폭력예방교육 내용에 인권이 접목되거나 '인권-폭력예방교육'으로 함께 표기되어 진행되고 있었고, 이로 인해 내용상 '인권'이 다소 협소해지기도 하였다. 그 외 인권교육 주제들은 학생들의 관심사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주제는 여성 관련 범죄와 권리에 대한 것들이었다.

3) 인권교육 실행 기반 인권센터 분류

제도적 특성과 교육 방식, 내용 분석은 인권센터들의 인권교육 관련 특징들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인권교육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인권센터마다 정도가 다르다. 그래서 이 항에서는 인권교육을 시행하는 센터들 간 차이를 서술하고자 한다.

www.kci.go.kr

(1) 인권교육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센터들

첫 번째 유형의 인권센터들은 다른 곳들보다 제도적 환경 구성과 실질적 운영에 대한 세부 확인이 가능한 곳들이다. 물론 활발히 인권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분류된 인권센터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권교육 내용을 동일하게 제공한다고 할 수 없다. 이들도 온라인 인권교육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인권/폭력예방 교육'으로 실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기본적으로 센터의 역할 중 인권교육에 대한 명시를 해 놓았고, 교육방식도 온라인 교육 뿐 아니라 특강 등 두 가지 방식 이상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들을 인권교육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곳으로 보았다. 여기에 해당하는 학교들은 서울대, 중앙대, 충남대, 동국대, 고려대, 경북대, 연세대, 단국대, 제주대, 한양대, 평택대, 부산대, 아주대 등 총 13곳이었다.

개소 시기를 확인해보았을 때, 2017-2018년 개소한 곳들이 8곳이나 포함되어 후기에 개소한 인권센터들도 개설 초기부터 인권교육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례로 부산대 인권센터는 2018년 개소한 후발주자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와 학교 비교과 교육과정, 인권센터 프로그램을 연결하여 일반 시민과 학생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기존에 강세였던 젠더 연구를 인권센터와 연계하여 교육 활동을 구성하고 있다. 평택대 역시 2018년 인권센터가 개소한 이후 노동 관련 인권 교양 수업과의 연계, 서포터즈 모집 등을 통해 인권교육을 구성하고 있었다.

인권교육이 활발한 편으로 확인되는 인권센터 중 서울대, 충남대, 동국대, 고려대, 연세대는 해당 대학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 및 연구 등 인권증진 MOU를 맺고 있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와 MOU를 맺은 나머지 학교의 인권센터들은 기초적인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었으므로 인권센터 인권교육에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보기 힘들다. 오히려 기타 활

www.kci.go.kr

동인 서포터즈 모집이 센터의 인권교육과 더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포터즈를 모집하는 학교들은 총 10곳이었는데 그 중 7곳이 인권교육을 활발히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3곳의 인권센터들 중에서도 6개 인권센터(서울대, 중앙대, 연세대, 제주대, 평택대, 부산대)는 학점부과가 가능한 교양 수업과의 연계, 다른 대학 인권센터와의 MOU 등 다른 인권센터에 비해 더 많은 인권교육 활동 영역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는 인권교육이 지속적일 수 있는 요소를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기초적인 인권교육 활동을 하는 센터들

두 번째로 묶을 수 있는 유형은 기초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센터들이다. 전체 센터들 중에서 인권교육에 대한 제도적 환경과 별개로 최소한의 인권교육 운영이 확인되는 곳들이다.

이 집단에 해당하는 인권센터들은 총 12곳이며, 2곳을 제외하면 모두 2017년 이후 개소한 곳들이다. 이들 중 절반이 센터에 인권교육 계획이 명시되어 있고, 온라인 교육이나 특강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다. 인권센터 인권교육 실시가 확인되지만, 내용 면에서 주로 '폭력예방교육과 인권', 또는 '폭력예방교육'을 인권교육 영상으로 제공하고 기타 활동이 없어 초기 수준이라 본다.

6.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인권센터를 중심으로 대학 내 인권교육을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여 제도적 환경과 운영내용을 분석틀로 삼

www.kci.go.kr

아 인권교육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한국 대학 인권센터는 학내 필요성, 사회적 압력 등에 따라 기존의 고충 업무 기관을 확대 개소하였다. 이에 따라 기능의 다양화가 가능해질 것을 기대해볼 수 있었다. 분석 결과, 대학 내 인권센터에서 인권교육은 학내 전(全) 구성원을 대상으로 일정 정도 영역을 확보하고 있었다. 하지만 인권센터 설치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는 할 수 없다. 인권센터 설립에 비해 인권교육 실시가 비례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내용 면에서도 기존의 성폭력 교육만을 인권교육의 방식과 내용으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인권센터가 늘면서 학교별로 성격이 조금씩 다른 조직이 나타날 수도 있으나 그러한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대학 내에서 성평등 센터가 해왔던 역할과 내용을 이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일부 몇몇 학교들이 인권교육에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

이같은 현실을 바탕으로 가능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들은 인권센터 설치 뿐 아니라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인권센터는 이전 기구의 인력에 업무를 추가한 형태이다. 이는 학내 인권환경 구축을 위한다는 인권센터가 설치 목적을 이루기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젠더 문제 뿐 아니라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서의 인권을 다루기 위해서는 내부 인력에 대한 재교육 뿐 아니라 인권 전문 인력 추가 배치를 통해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과 시민사회와의 선순환 구조를 통한 인권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현재 인권센터의 교육은 주로 센터 자체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내용 역시 다양성을 확보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여러 전공과 인권을 관련해 교육내용을 풍성하게 하고, 시민사회와 인권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 대학 내 인권센터 인권교육 분석을 통해 고등교육 내

www.kci.go.kr

인권교육의 모습을 일부 담아보았다. 조직의 경험과 논리에 따라 구체화된 부분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변화시도나 방향설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연구방법과 내용에 있어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먼저, 연구방법에 있어 인권센터 및 인권교육에 대해 온라인으로 확인되는 정보에 한정하여 조사하였다. 그러다보니 인권교육이 실제로 몇 번 실시되는지 파악할 수 없었고, 인권교육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양적 현황을 깊이 보여주기에는 자료의 한계가 발생하였다. 내용 면에 있어서는 연구대상을 4년제 대학에 한정했다는 점, 인권센터의 주요 업무인 상담과 인권교육의 연계성을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았다는 점,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권센터 관계자들의 인식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학내 구성원들의 인권센터에 대한 이용 원인과 인식을 배제했다는 데에서 대학 내 인권교육을 입체적으로 조명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여 할 것이다.

(2020년 4월 5일 접수, 5월 22일 심사완료, 5월 24일 게재확정)

www.kci.go.kr

참고문헌

강경욱. 2012.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반 편견 및 장애 인식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5(1). 19-43.

구정화. 2004. “아동의 ‘인권’ 개념 형성에 비추어 본 초등사회과 인권 내용 적합성.” 『사회과교육』. 43(2). 65-84.

_____. 2016. “초등 사회과 ‘인권’ 내용 단원의 교육과정 시기별 변화 분석.” 『법교육연구』. 11(2). 1-34.

국가인권위원회. 2009. 『대학교 인권관련 교과목 실러버스 모음집』. 국가인권위원회.

_____. 2010. 『제2차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 행동계획(2010-2014)(11-1620000-000286-01)』. 국가인권위원회.

_____. 2012. 『2012년도 전국대학교 인권 교과목 개설현황조사 결과보고』. 국가인권위원회.

_____. 2014. 『고등교육 기관에서의 인권교육 실태조사(11-1620000-000545-01)』. 국가인권위원회.

_____. 2017. 『대학, 인권을 만나다: 2017년 제3차 한국인권 교육포럼, 2017년 제2차 인권교육 연구중심대학협의회』. 국가인권위원회.

김녕. 2004.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와 빈곤, 그리고 인권 NGO들의 역할.” 『현상과 인식』. 28(3). 67-99.

김세영. 2015. “예비 사회복지사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 관련 전공 대학생과 타 전공 대학생 간 차이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32. 281-301.

김수경. 2019. “소수자 정책과 인권담론: 고용허가제와 차별금지법 사례분석.”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12(1). 85-110.

김숙자, 장갑희. 2010. “유치원 교육활동 지도서에 나타난 유아인권 관련 교육내용 분석.”『유아교육학논집』. 14(1). 349-373.

김영중. 2018. “대학에서의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내 기구의 역할과 발전방향.” 『경찰법연구』. 16(1). 265-283.

www.kci.go.kr

김태영. 2012. “제도적 행위자와 제도적 논리: 한국 대학에서의 사회복지학과의 확산.” 『사회와 이론』. 20. 307-339.

김형종. 2017. “한국의 아세안연구: ‘아세안학’의 모색?” 『아시아리뷰』. 7(1). 199-225

남수경. 2005.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안’을 둘러싼 갈등 전개과정 분석.”『교육행정학연구』. 23(3). 453-478.

류지헌, 허창영. 2008. “대학생의 인권 인식에 대한 요인분석 및 인권 태도의 인식수준.” 『민주주의와 인권』. 8(1). 175-202.

문광민. 2018. “정부의 대학 산학협력 재정지원은 효과적인가?” 『한국 사회와 행정연구』. 29(1). 53-82.

박성익, 이승미. 2000. “인권 교육프로그램의 효과검증 연구.” 『교육학연구』. 38(1). 185-205.

박은미, 정우열. 2008. “한국 여성정책의 역사적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23. 239-358.

박찬운. 2008. “인권법의 개념 정립과 로스쿨에서의 교육방법에 대한 소고.” 『인권법평론』. 2. 3-54.

방대혁. 2013. 대학생의 인권인식과 사회적 책임성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배유경. 2015.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한국 양성평등교육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박사학위 논문.

백승민, 김민지. 2016. “한국 고등교육에서의 인권교육.” 『법과 인권교육연구』. 9(1). 27-50.

백승민. 2019. 한국 대학에서의 인권교육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서보라, 박찬석. 2016.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위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실행연구: 인권, 반편견·반차별 교육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6. 27-65.

심태은, 이송이. 2018. “대학생의 인권감수성 수준과 인권인식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9(10). 352-360.

www.kci.go.kr

안정희, 배성아. 2013. “국가교육과정 개정과 대학입학전형제도 변화에 관한 고찰.” 『교육과정연구』. 31(3). 95-120.

염형국. 2008. “로스쿨에서의 공익인권법 교육활성화 방안.” 『인권법평론』. 2. 119-148.

은기수. 2002. “미국의 자국학 연구: 세계화 속에서 한국학 연구의 가능성.” 『정신문화연구』. 25(1). 155-173.

은지용, 설규주. 2016. “학교 인권 교육 개선을 위한 중학교 사회교과서 분석 연구.” 『교육연구』. 67. 9-36.

이강원. 2013. “학회·학과·연구소를 중심으로 본 중국지리학사: 1909-1978.” 『대한지리학회지』. 48(3). 417-432.

이경희, 정상우. 2013. “간호대학에서의 인권교육 실태 및 필요성 연구.” 『법교육연구』. 8(1). 111-140.

이나영. 2011. “한국 ‘여성학’의 위치성: 미완의 제도화와 기회구조의 변화.” 『한국여성학』. 27(4). 37-81.

이선엽. 2013. “인권의 제도화에 관한 신제도주의적 접근: 제도의 결합, 경로의존성, 경로창조.”『한국행정사학지』. 32. 127-160

이승미. 2000.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인지 정서 요인에 관한 실험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학위 논문.

이주한. 2013. “초등 예비교사들의 인권의식 및 교육대학 내 인권보장에 관한 인식.” 『한국초등교육』. 24(4). 37-55.

이혜원, 최경옥, 이혜영. 2009.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아동복지론 교과목의 개발과 효과성." 『한국아동복지학』. 29. 73-96.

정준영. 2013. “해방 직후 대학사회 형성과 학문의 제도화: 학과제 도입의 역사 사회학적 의미.” 『한국근현대사연구』. 67. 41-87.

조연민, 홍인. 2013. “서울대학교 로스쿨 공익인권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공익과 인권』. 13. 49-86.

조윤경. 2018. 대학생 인권의식과 자아존중감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석사학위 논문.

www.kci.go.kr

최형찬 2014. “도덕 교과서의 인권 관련 내용 분석: 2009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도덕교과서를 중심으로.” 『도덕윤리과교육연구』. 45. 83-108.

채형복. 2011. “로스쿨에서의 인권교육 현황과 과제: 유엔 세계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관점에서.”『동아법학』. 52. 31-65.

하경수. 2013. “우리 사회의 인권담론과 어린이 인권교육.” 『사회과교육연구』. 20(3). 89-100.

홍성수. 2019. “대학 인권센터의 의의와 과제.” 『법과 사회』. 60. 197-230.

황동진, 송혁, 김사현. 2015. “인권교육이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2(10). 77-100.

황주연, 최현경. 2015. “간호대학생의 인권감수성과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한국간호교육학회지』. 21(4). 454-464)

Asano, Makoto. 2000. "School Reform, Human Rights, and Global Education." *Theory into Practice*. 39(2). 104-110.

Benavot, Aaron., Yun-Kyung Cha, David Kamens, John W. Meyer and Suk-Ying Wong. 1991. "Knowledge for the Masses: World Models and National Curricula, 1920-1986."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6(1). 85-100.

Cole, Wade M. 2015. “Mind the Gap: State Capacity and the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Treat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69(2). 405-441.

Cuccia, Nick J. 1981. "The Socializing Function of the Extracurriculum: A Review of the Literature." *The High School Journal*. 65(3). 99-103.

Davis, David R., Amanda Murdie, and Coty Garnett Steinmetz. 2012. ""Makers and Shapers": Human Rights INGO and Public Opinion." *Human Rights Quarterly*. 34(1). 199-224.

Edelman, Lauren B. 1990. “Legal Environments and Organizational Governance: The Expansion of Due Process in the American Workplac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5(6). 1401-1440.

Friedland, Rogers, and Robert Alford. 1991. “Bring society Back In: Symbols,

www.kci.go.kr

Practices, and Institutional Contradictions." in Walter W. Powell and Paul J. DiMaggio(eds.), *The New Institutionalism in Organizational Analysi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32-262.

Firer, Ruth. 2002. "Human rights in History and Civics Textbooks: The Case of Israel." *Curriculum Inquiry.* 28(2). 195-208.

Holland, Alyce. and Thomas Andre. 1991. "Is the Extracurriculum an Extra Curriculum?" *American Secondary Education.* 19(2). 6-12.

Kingston, Lindsey N. 2014. "The Rise of Human Rights Education: Opportunities, Challenges, and Future Possibilities." *Societies Without Borders.* 9(2). 188-210.

Kraatz, Matthew S., and Edward J. Zajac. 1996. "Exploring the Limits of the New Institutionalism: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Illegitimate Organizational Chan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1(5). 812-836.

Landman, Todd. 2004. "Measuring Human Rights: Principle, Practice and Policy." *Human Rights Quarterly.* 26(4). 906-931.

Little, Minroe H. 2002. "The Extra-Curricular Activities of Black College Students, 1868-1940." *The Journal of African American History.* 87. 43-55.

Meyer, John W., Patricia Bromley and Francisco O. Ramirez. 2010. "Human Rights in Social Science Textbooks: Cross-National Analyses, 1970-2008." *Sociology of Education.* 83(4). 111-134.

Moon, Rennie J., and Jeong-Woo Koo. 2011. "Global Citizenship and Human Rights: A Longitudinal Analysis of Social Studies and Ethics Textbooks in the Republic of Korea." *Comparative Education Review.* 55(4). 574-599.

Oomen, Barbara. 2013. "Waving with Treaties? The Politics of Implementing Human Rights Education in the Netherlands." *Journal of Human Rights Practice.* 5(2). 291-317.

Savelsberg, Joachim J. 1992. "Law that Does Not Fit Society: Sentencing Guidelines as a Neoclassical Reaction to the Dilemmas of Substantivized Law."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7(5). 1346-1381.

www.kci.go.kr

Shulruf, Boaz. 2010. "Do extra-curricular activities in schools improve educational outcomes? A critical review and meta-analysis of the literature." *International Review of Education.* 56(5/6). 591-612

Smith, Rhona K.M. 2013. "Embedding Research in the Human Rights Law Curriculum: Reflections on the Teaching-Research Link Higher Education." *Journal of Human Rights Practice.* 5(2). 337-357.

Stuber, Jenny M. 2009. "Class, Culture, and Participation in the Collegiate Extra-Curriculum." *Sociological Forum.* 24(4). 877-900.

Suárez, David and Patricia Bromely. 2012. "Professionalizing a Global Social Movement: Universities and Human Rights." *American Journal of Education.* 118. 253-280.

Thornton, Patricia H., William Ocasio. 1990. "Institutional Logic and the Historical Contingency of Power in Organizations: Executive Succession in the Higher Education Publishing Industry, 1958-1990."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5(3). 801-843.

Thornton, Patricia H., William Ocasio and Michael Lounsbury. 2012. *The Institutional Logics Perspective: A New Approach to Culture, Structure, and Process*. Oxford University Press.

기타자료(인터넷 보도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18.02.07. *인권위, 서울대와 인권증진 MOU 체결.* 보도자료.

김유림, 민승용, 김민재. "인권센터 '혐오시대, 희망찾기' 강연 개최해". 「연세춘추」. 2017.12.03. http://chunchu.yonsei.ac.kr/news/articleView.html?idxno=23499

김지훈. "인권위, '대학원생 인권장전 만들기' 대학에 권고." 「한겨레」. 2016. 12. 23.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5880.html

김태규. "극우단체 가짜뉴스 공세에...인권법안들 줄줄이 '좌초.'" 「한겨레」. 2018. 10. 02. http://www.hani.co.kr/arti/PRINT/864196.html

www.kci.go.kr

신은별·정반석. “교수 막말·갑질 어디에 말하죠...대학 10곳 중 1곳만 인권센터.” 「한국일보」. 2017. 07. 2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7210423924217

신혜정. “국가인권위, 전국 62개 대학과 ‘제1차 대학인권센터협의회’ 개최”. 「Law Leader」. 2019.11.18.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 View.html?idxno=3514

연세대학교. 2018. 연세대학교 대학요람. 연세대학교.

오마이뉴스“당신의 대학에는 ‘인권센터’가 있나요?” 「오마이뉴스」. 2018. 04. 0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19884

원종진. “[취재파일] ‘대학인권센터 설치의무화법 발의’...앞으로 남은 과제들”. SBS.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322168&plink=ORI&cooper=NAVER (검색일: 2017.07.31.)

윤지은. 2007.10.31.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대학신문」.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43115

윤설영. 2007.10.30. *{단독} 정부기관에 ‘MOU’ 러브콜.*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71030008006

전명훈. “‘미투’ 쏟아진 올해...“대학 인권센터 설립 의무화 해야”” 「연합뉴스」. 2018. 12. 06. https://www.yna.co.kr/view/AKR20181206121700004

조영은. “이화여대, 14일 인권센터 개소식 개최”. 「한국대학신문」. 2018.09.13.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94402

www.kci.go.kr

Abstract

How have been Korean universities fulfilled Human Rights Education? : focus on Human Rights Centers in Universities

*Seungmin Bae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Korean higher education. Especially, this research focused on Human Rights centers in universities. Using empirical data on the environment and ac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this research examines and evaluates.

Finding suggests that Human Rights education of Human Rights centers has not notably enlarged. The main themes are few social issues such as disability, labor, LGBTQ, and sexual violence, or topics of interest to students. And Human Rights education is not enough in proportion to increasing of Human Rights centers.

Key words: Human Rights, Human Right Education, Human Rights Center in Universities

* ASEM Global Ageing Center, Researcher.

www.kci.go.kr